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65
----------	-----

2023년 9월 12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7월 27일, 최윤희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
 -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3년 9월 12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윤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의 행복 중심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 추진 및 수립·시행된 계획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.
-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」를 폐지함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7월 27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965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관련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」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·공포되었으며,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동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·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(제4조)

학교·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며 지표를 지수화한 학교·학생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9조).

-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른 학교·학생 행복 증진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¹⁾ 이를 통해 볼 때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 조례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동 조례의 제정을 수용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입법권 훼손은 물론 업무 해태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81, 2023. 8. 22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12명, 찬성 9명, 반대 3명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1) 서울시의회 요구자료(요구번호 1240) ‘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의해 추진된 사업 현황 및 수립·시행된 계획’에 대해 ‘해당없음’으로 보고함(민주시민생활교육과-10523, 2023.5.25.)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

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6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7월 27일
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
박춘선, 박환희, 소영철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희원, 임춘대,
장태용, 채수지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의 행복 중심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 추진 및 수립·시행된 계획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
-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를 폐지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